

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「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5년 2월 27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2. 발 의 자 : 조 인 호 의원

3. 제정이유

- 완도군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(안 제4조, 안 제5조)
- 지원신청 등(안 제6조)
-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(안 제7조, 안 제8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9조)

5. 관련법령 :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5. 2. 27. ~ 2025. 3. 4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2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소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
「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자 (서명 또는 인)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				

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라 완도군 관내 가정
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
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
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”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
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아이돌봄서비스”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
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서비스 제공기관”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아이돌
봄 지원법」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
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보호자가 아이돌
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
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기준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완도군에
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

는 가정으로 한다.

제6조(지원신청 등)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,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.

제7조(지원중지)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.

1. 지원대상자가 전출,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
3.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

제8조(환수조치)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

신 청 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서비스 이 용 대상자	관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서비스 유형(담당자확인)
				시간제 / 종일제 가형 ☐ 나형 ☐ 다형 ☐ 라형 ☐ 마형 ☐
				시간제 / 종일제 가형 ☐ 나형 ☐ 다형 ☐ 라형 ☐ 마형 ☐
				시간제 / 종일제 가형 ☐ 나형 ☐ 다형 ☐ 라형 ☐ 마형 ☐
연 락 처	자택		휴대전화	
입금계좌	은행명 : 예금주(신청인) : 계좌번호 :			
양육공백 유 형	취업 한부모 ☐ 맞벌이 ☐ 다자녀 ☐ 장애부모 ☐ 기타 ☐			
○ 신청인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여야 함 ○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.				
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 합니다. 신 청 인 : _____ (서명 또는 인) _____ 년 월 일 완 도 군 수 귀 하				
제출서류 :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,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				

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

1. 사무의 명칭 :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

2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	동의여부(동의시 서명 또는 인)
주민등록등(초)본	
가족관계증명서	
인적변동, 전출입 정보	

※ 인적변동 정보 : 사망, 말소, 거주불명, 성명/주민등록 변경 등

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(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,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)

본인(보호자)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보호자 : _____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수 귀하